

產業化 時期 美國 老人們의 經濟的 地位： 福祉國家 形成에 대한 含意⁽¹⁾

李澈羲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미국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는 20세기 초 복지국가 형성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최근의 문헌들은 산업화 시기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소위 ‘家族戰略’이라고 하는 가족 내의 자원배분은 노령기의 산업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했으며 노년 노동자들의 수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의 家計消費支出資料를 중심으로 이 시기 노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심층적으로 재조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가족전략’이 노령기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 시기 퇴직자들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시기를 통한 빠른 경제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여 노령인구의 소득이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근래의 문헌들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미약했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 노년인구의 경제적 지위가 절대적으로는 다소 개선되었을지 모르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는 더욱 열악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머리말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에서 산업화의 심화와 확산이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켰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널리 받아들여져 온 주장이었다. 동시대인들의 기록들은 이 시기의 급격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는 고령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해준다(Squier(1912), Epstein(1928)). 이 전통적인 주장에 따르면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의 강화, 공적인 교육의 필요성 증가, 보다 체계적인 경영기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高齡에 따른 불리함이 커졌으며, 年齡差別(age discrimination)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고용주들은 고령노동자들의 신규채용을 점차로 꺼리게 되었다(Graebner(1980), Haber(1983)).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는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사업 대학교육개혁지원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고령노동자의 장기실업 및 대규모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Keyssar(1986), Lee(1998)]. 또한 도시화에 따른 대가족의 해체는 노인들이 전통사회에서 유지하던 역할과 권위의 원천을 박탈한 것으로 인식되었다[Cowgill(1974)].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노인들의 빈곤과 경제적 의존의 문제는 革新主義(Progressivism) 시대 및 대공황기의 개혁가들로 하여금 公共福祉制度의 설립과 확대를 요구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Armstrong(1932), Epstein(1938), Lubove(1968)].

그런데 보다 최근의 경제사 및 사회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위에서 소개한 傳統說을 반박하고 산업화 시기 高齡者들의 경제적 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가족에 관한 사학자들의 연구들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족구조와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Chudacoff and Hareven(1978, 1979), Hareven(1982), Smith(1979)]. 20세기 초 직업에 따른 퇴직패턴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 시기의 퇴직이 상당히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퇴직자들은 저축과 가족의 부양에 힘입어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Gratton(1986), Weiler(1989), Carter and Sutch(1996a)].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연령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변화로부터 얻을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家口所得 및 支出資料를 분석한 연구들은 중년 이후 가장의 소득 감소는 다른 가구구성원, 특히 자녀의 수입증가에 의해 보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Haines(1979), Gratton and Rotondo(1991), Gratton(1996)]. 이 연구들은 산업화 시기의 노동계층이 '家族戰略(family strategies)'이라고 하는 가구 내에서의 소득 이전을 통해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Gratton(1996)은 1890년에서 1950년 사이에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수입이 절대적으로나 (청·장년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임으로써 산업화가 노인들의 빈곤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결정적으로 반박하였다.

이 연구들은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태동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에 따르면 20세기 초반을 통해 탄생한 여러 가지 공공 복지 및 보험 프로그램들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노년층의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전통적인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태동이 유럽에 비해 늦은 것은 높은 수준의 저축과 생명보험이나 산업연금과 같은 사적인 老後對策의 발달로 인해 미국 노년 층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Weaver(1983), Ransom and Sutch(1987), Ranson, Sutch, and Williamson(1993), Carter and Sutch(1996a)].

산업화 시기 노년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퇴직의 형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이철희(2000), Lee(2000)].⁽²⁾ 이 논문은 소득과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노년 인구의 경제적 지위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관련문헌들을 재고할 것이다. 첫째, 노년기에 접어든 노동자들이 자녀들의 수입증가에 힘입어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둘째, 퇴직자들의 경제적 여건은 비슷한 연령의 현역 노동자들의 여건과 비견할 만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앞서 소개한 최근 연구결과들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가구소득자료에 기초하여 소위 '가족전략'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구구성원들의 수입이 가구 전체의 경제적 자원으로 공유되고(pooled) 따라서 쉽게 家口主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은 다음 장에서 보듯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녀의 수입증가가 얼마만큼 그 부모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배분되었는지를 실제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로 선행 연구들은 자료의 한계 상 現役勞動者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³⁾ 따라서 그 결과가 전체 노년인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퇴직자와 노동시장참가자의 경제적 지위가 유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家族扶養과 老人們의 經濟的 厚生

경제학에서의 소득이나 소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가구를 분석의 단위로 삼아왔다. 예컨대 소득분배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간 혹은 가구간의 배분에 관심을 두었을 뿐 가족 구성원간의 배분문제는 최근까지도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개인이 아닌 가족이 소비와 노동공급의 결정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이론적으로 이 가정은 이타적인 家長이 존재하여 가족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물질적 자원과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한다[Becker(1981)]。

가족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들도 이와 같은 분석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심지어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정하는 가족의 개념은 복지국가 형성 이전의 노동계층 가구의 현실과 더 잘 부합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이 시기의 가장들은 가족들에 대해 보다 강력

(2) 이 연구들은 노년남성의 노동력 참가율의 장기적 추이, 농업부문의 쇠퇴가 노년남성의 노동력 참가에 미친 영향, 퇴직의 비자발성 문제 등을 다룬다.

(3) 1930년대까지의 가구소비지출자료들은 가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구들을 조사에서 배제하였다.

한 법적, 사회적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利他的인 獨裁者’에 의한 가족후생의 극대화가 더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개인의 희생은 흔히 용인되었던 데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가장의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노동시장에 내보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Goldin(1979, 1981), Haines(1979, 1981), Rotella and Alter(1993)). 여러 문헌들에서 묘사되듯 전통사회的大가족은 소득과 지출의 공유, 제반 家族事의 협력이 이루어지던 경제적인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Tilly and Scott(1978), Hareven(1982), Bodnar (1985)).

근래에 와서는 이상과 같은 경제행위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家族 内部에서의 資源配分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게임이론적인 협상전략을 적용하여 가족의 여러 가지 경제적 행위를 분석한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었다(Manser and Brown(1980), McElroy and Horney(1981), Chiappori (1988, 1992), Lundberg and Pollak(1993, 1994), Bergstrom(1996)). 이 모형들은 가구의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독립적인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 내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모형들의 중요한 시사점은 각 가족 구성원의 후생수준은 가족전체의 소득뿐만 아니라 각자가 얻는 수입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들이 1960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내에서 자원배분이 소득의 원천이 바뀜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예컨대 1970년대 말 영국의 아동보조금 지급의 수령자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된 이후 가구 내 소비지출 가운데 여성 및 아동용 재화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Lundberg, Pollak, and Wales(1997)). Lazear and Michael(1988)은 1972-1973년에 시행된 미국 消費支出調查(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에 비해 보다 높은 비율의 가계지출을 담당했음을 밝혔다.

역사적인 연구들도 가구 내부의 자원배분, 특히 자녀에 의한 부모의 부양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약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1925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행해진 가구지출조사자료에 대한 한 연구는 대가족이 한 가구 내에 거주했을 경우라도 이들이 단일한 경제적 단위로서 생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Neckerman(1995)). 20세기 초 가족의 거주형태에 관한 한 연구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할 경우 물질적인 지원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Moehling(1996)). 20세기 초 미국 남부의 면직공장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한 분석결과는 아동의 노동공급이 그 보호자의 소

득보다는 아동 자신의 임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가 가구소득의 보전을 위해 자녀를 일터로 내보냈다는 과거의 견해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Holleran (1997)).

위에서 살펴본 가구 내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전체가구소득에 기초해서 노령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즉 가족 내의 소득의 공유 및 배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녀의 수입증가에 의해 전체 가구소득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한 가구의 구성원의 후생은 총가구소득의 크기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의 필요의 정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런데 가구의 규모에 변화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전보다 더 큰 소비지출의 수요가 발생하여 전체 가구소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수 있다.⁽⁴⁾ 둘째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구 내에서의 자원배분은 所得의 源泉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수입이 가계에 공헌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가구 전체의 소비지출 가운데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지출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령기에 접어든 가구주들의 후생수준은 저하했을 가능성이 있다.

3. 個別的인 年齡-消費 軌跡(age-consumption profile)의 推定

이상의 논의는 가구 전체의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개별 가구구성원의 후생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노령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보다는 개인의 소비지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용한 소비지출자료들은 衣類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의 지출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선 집계적인 소비지출자료로부터 개인의 지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1888-1890년, 1917-1918년, 1935-1936년의 가구소비지출조사의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개별적인 소비지출액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⁵⁾

(4) Gratton (1996, p. 49)은 50세 이후 가족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일인당 가계소득은 더욱 증가했으리라고 지적함으로써 소비지출의 수요측면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소비지출의 필요는 가족의 수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5) 자료의 출처는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ICPSR), #7711, #8299, #8908이다. 이 자료는 가족경제의 구조를 조사한 다른 연구들에 의해 이용된

가구 내에서의 자원배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이는 자료의 제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던 Lazear and Michael(1998)의 연구는 1960-1961년과 1972-1973년의 미국 가구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성인과 아동의 상대적인 지출액의 크기를 분석한 바 있다. 보다 최근에 Deaton and Paxson(1999)은 태국과 타이완의 가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同年出生者(cohort)의 年齡-貯蓄 軌跡(age-saving profile)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들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크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가구지출을 그 가구의 인구학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에 회귀함으로써 개별소비지출의 분석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추정하고 있다.

이하에 제시될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두 연구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즉 기본적인 발상은 자녀 및 다른 가구 구성원의 수, 연령, 성별 등을 통제하고 난 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구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k 라고 하는 품목에 대한 가구지출액을 가구주의 연령에 관한 더미변수(D), 특정한 성별과 연령의 자녀 및 기타 가구원의 수(C 와 N)에 대해 회귀한다.

$$E_j^k = \alpha + \sum_h \beta^h D_j^h + \sum_s \sum_a \gamma^{s,a} C^{s,a} + \sum_s \sum_a \delta^{s,a} N^{s,a} + \varepsilon_j$$

위의 식에서 첨자 h , s , a 는 각각 가장의 연령, 자녀 및 기타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을 나타낸다. 이용된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가구주들은 거의 대부분 기혼남성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소비 궤적을 따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가구주가 아닌 家口主 夫婦를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위의 회귀분석에서 얻은 α 와 β^h 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가장의 연령에 따라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회귀식의 절편 α 는 오직 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주가 統制年齡集團(control age group)에 속하는 가구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가구주의 연령이 t 인 부부의 소비지출은 $\alpha + \beta^t$ 로 계산된다.

실제의 회귀분석에 있어서 가구주들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등 다섯 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20-29세의 가구주들이 통제그룹으로 선택되어 더미변수 D^{20-29} 는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 성별의 자녀들과 기타 가구원들은 5세 미만,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세 이상 등 일곱 개의 연령집단으로 나뉘었다. 가계지출내역은 의류, 식료품, 주거, 가구 및 비품, 연료, 의료비,

바 있다(Haines(1979), Gratton and Rotondo(1991), Gratton(1996)). 이 자료들의 더 자세한 성격에 대해서는 이 문헌들을 참조하라.

기타 지출 등 일곱 개의 품목으로 구분되었다. 파라미터 $\gamma^{s,a}$ 와 $\delta^{s,a}$ 는 특정한 성별과 연령의 자녀 및 기타 가구원이 추가될 때 가구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가구주가 기혼남성이 아니거나 그 연령이 20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인 소수의 가구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위의 회귀식에 나타나 있는 가구주의 연령에 관한 더미변수 대신에 연령 및 그 제곱항을 이용한 회귀분석도 수행되어 모형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관찰하였다.⁽⁶⁾

〈表 1〉은 1917-1918년 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품목 및 일곱 개의 품목 각각에 대해 실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파라미터 $\gamma^{s,a}$ 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커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계지출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gamma^{s,a}$ 의 크기가 남녀 공히 10-14세에서 15-19세 사이에 특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나이에 따른 소비지출증가가 부분적으로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두 시기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은 일과 관련된 지출의 증가와 함께 자녀의 수입으로 말미암은(자녀의 수입증가는 부분적으로는 가장의 연령에 반영되지만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다) 소득효과로 인해 家計消費를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2〉는 1917-1919년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家口主 夫婦의 연령에 따른 개별 및 전체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1888-1890년과 1935-1936년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附表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앞에서 설명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개인의 연령-소비 궤적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자. 이 작업은 실제의 개인별 지출액을 알고 있는 의류에 대해 실제 지출액과 추정된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表 2〉의 A행에 제시된 두 액수의 비교 결과는 모든 연령에 대해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 의류소비지출액이 실제의 지출액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 개인별 지출액의 절대적 크기를 정확하게 추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괴리는 아마도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인 요인들이 회귀분석에 있어서 완전하게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령-지출 궤적의 형태에 있어서는 실제 지출액과 추정된 지

(6) 1888-1890년과 1935-1936년 조사자료의 분석에는 약간 다른 회귀모형이 이용되었다. 1888-1890년 조사의 경우 자녀가 아닌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을 무시하고 다른 가구구성원 전체의 수를 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1935-1936년의 경우에는 자녀 이외의 다른 가구구성원의 수가 매우 적다. 이에 따라 자녀와 기타 가구구성원을 구분하지 않고 변수를 구성하였다.

〈表 1〉回歸分析의 結果: 家口의 構造와 消費支出

변수	평균	전체	의류	식료품	주거	가구	연료	의료	기타
절편		1250.47***	203.93***	407.80***	185.73***	96.81***	65.53***	35.29***	255.35***
D ²⁰⁻²⁹	0.2020	NI	NI	NI	NI	NI	NI	NI	NI
D ³⁰⁻³⁹	0.4455	23.52***	-4.77*	7.66***	26.28***	-24.67***	4.78***	1.61	12.63***
D ⁴⁰⁻⁴⁹	0.2665	-13.37	-22.58***	2.41	35.10***	-35.45***	5.86***	1.54	-0.25
D ⁵⁰⁻⁵⁹	0.0724	-102.14***	-50.30***	-7.84	28.46***	-50.15***	5.66***	-2.53	-25.42***
D ⁶⁰⁻⁶⁹	0.0133	-232.47***	-74.58***	-56.36***	19.50**	-59.02***	1.80	-4.29	-59.53***
C ^{M00-04}	0.5428	8.75*	-2.78**	34.81***	-7.56***	-3.07***	0.56	2.28***	-15.47***
C ^{M05-09}	0.3743	50.46***	13.27***	52.13***	-5.81***	-1.88*	0.50	-0.05	-7.68***
C ^{M10-14}	0.2398	77.45***	26.23***	59.87***	-4.90**	-2.63**	0.79	-0.70	-1.19
C ^{M15-19}	0.0892	302.11***	81.58***	123.84***	3.74	11.79***	4.43***	2.73*	73.97***
C ^{M20-24}	0.0096	415.56***	104.57***	124.72***	12.69	12.71**	6.32***	21.13***	133.38***
C ^{M25-29}	0.0015	366.17***	61.06***	159.50***	6.75	11.78	1.55	21.35**	104.69***
C ^{M30+}	0.0010	89.11	-25.06	74.53**	16.94	-32.92*	3.98	12.08	39.56
C ^{F00-04}	0.5249	7.98*	-1.48	34.54***	-6.99***	-2.40***	0.58	0.51	-16.76***
C ^{F05-09}	0.3687	39.76***	11.38***	48.84***	-6.28***	-1.62	1.33***	-0.57	-13.32***
C ^{F10-14}	0.2492	66.39***	21.44***	55.40***	-5.48***	-0.43	1.77***	-1.98**	-4.32
C ^{F15-19}	0.1043	222.01***	84.40***	91.65***	2.00	11.37***	5.19***	1.53	25.84***
C ^{F20-24}	0.0217	386.72***	115.45***	155.55***	18.99***	13.95***	6.75***	5.75**	70.25***
C ^{F25-29}	0.0039	243.21***	91.34***	122.04***	21.77	-3.13	10.22***	10.78*	-9.38
C ^{F30+}	0.0020	168.74***	58.29***	89.64***	-6.12	-4.13	3.61	16.94	10.49
N ^{M00-04}	0.0337	32.56**	3.51	-0.67	35.09***	4.27	5.83***	-0.82	-14.65**
N ^{M05-09}	0.0025	1.49	6.80	28.16	-5.61	1.43	-2.51	-11.10	-15.67
N ^{M10-14}	0.0022	61.25	-4.44	54.47***	-0.90	-17.12	-4.74	-11.31	45.30
N ^{M15-19}	0.0033	52.75	21.17	52.21***	-5.76	-7.47	-3.03	10.35	-14.70
N ^{M20-24}	0.0068	59.31*	18.81**	4.02	19.12*	8.60	8.15***	-7.47	8.05
N ^{M25-29}	0.0087	133.76***	9.46	31.40***	61.02***	3.16	1.83	-2.71	29.59*
N ^{M30+}	0.0303	120.72***	22.98***	29.02***	34.78***	3.20	4.49***	4.15*	22.08***
N ^{F00-04}	0.0988	88.20***	12.89***	2.15	13.03***	11.14***	5.95***	15.05***	27.97***
N ^{F05-09}	0.0041	-21.44	2.29	19.62	-15.01	-4.63	-0.13	-6.02	-17.56
N ^{F10-14}	0.0068	43.30	7.45	32.80***	-10.01	3.34	-1.94	-0.31	11.97
N ^{F15-19}	0.0137	102.60***	20.33***	4.42	5.73	12.85**	3.64*	15.28***	40.32***
N ^{F20-24}	0.0157	112.81***	25.17***	12.42*	-1.11	13.33***	4.11**	11.74***	47.14***
N ^{F25-29}	0.0270	105.91***	13.97***	14.71**	8.98	9.14***	3.20**	20.73***	35.16***
N ^{F30+}	0.1044	88.50***	8.84***	21.92***	7.52**	1.93	3.84***	15.13***	29.28***

(R²=0.224) (R²=0.241) (R²=0.224) (R²=0.426) (R²=0.035) (R²=0.041) (R²=0.036) (R²=0.057)

출액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60대 부부의 지출액과 30대 부부의 지출액의 비율은 실제치의 경우 67%, 추정치의 경우 64%로 비슷하다. 이 연구의 주된

〈表 2〉 1917-1919年 家口主夫婦의 年齡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化(달러)

	가구주의 연령					(6) (5)/(2)
	(1) 20-29	(2) 30-39	(3) 40-49	(4) 50-59	(5) 60-69	
관측 인원	2,584	5,697	3,408	927	171	
A. 의류(실제치)	158	138	118	102	93	0.674
의류(추정치)	204	199	181	154	128	0.643
B. 모형 1(더미변수)						
식료품	408	416	418	410	354	0.851
주거	186	212	220	214	205	0.967
가구	97	72	61	47	38	0.528
연료	66	70	71	71	67	0.957
의료	35	37	37	33	31	0.838
기타	255	268	255	230	196	0.731
C. 모형 2(다항식)						
식료품	408	417	412	393	360	0.863
주거	186	211	222	219	203	0.962
가구	96	74	57	43	33	0.446
연료	66	71	73	73	70	0.986
의료	36	37	36	34	29	0.784
기타	258	275	271	247	203	0.738
D. 총지출						
모형 1	1,205	1,213	1,180	1,107	984	0.811
모형 2	1,208	1,223	1,189	1,111	991	0.810
모형 3(총계)	1,250	1,274	1,237	1,148	1,018	0.799
E. 가계 지출	1,313	1,393	1,509	1,548	1,469	1.055
F. 가계 수입	1,372	1,461	1,588	1,653	1,590	1.088
G. 가구주의 노동 수입	1,312	1,373	1,328	1,164	975	0.710

註: 개인의 소비 지출액이 알려져 있는 의류 항목을 제외한 품목의 소비 지출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자세한 방법은 본문을 참조할 것.

資料: 1917-1919년 Cost of Living Survey.

관심이 가계지출의 절대액보다는 연령에 따른 변화의 패턴인 만큼 〈表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다른 年度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의류소비지출의 연령-지출 궤적은 〈表 2〉에 제시된 1917-1919년의 결과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조사자료 모

두 추정치가 실제값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偏倚의 정도가 연령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1917-1919년의 결과와는 달리 1888-1890년 및 1935-1936년 조사자료를 이용한 결과의 경우에는 上向偏倚의 정도가 청년 및 고령층에 비해 중년층이 더 심하다. 따라서 추정된 연령-지출 궤적은 실제의 궤적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 역의 U자 형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사자료에 따른 차이는 1917-1919년 조사자료의 표본 크기(12,787가구)에 비해 다른 두 조사자료의 표본(1888-1890년에는 6,575가구, 1935-1936년에는 2,364가구)이 훨씬 작은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다른 가능한 이유는 자료상의 특성 때문에 1917-1919년 조사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인구학적 구조가 훨씬 더 정확히 통제되었다는 것이다.

〈表 2〉와 〈附表 1〉 및 〈附表 2〉의 B와 C행은 두 가지의 상이한 회귀모형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 개별품목에 대해 연령-지출 궤적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형(모형 1)은 〈表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의 연령에 따른 더미변수를 이용한 반면, 다른 모형(모형 2)은 가장의 연령 및 연령의 제곱을 포함하여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형을 토대로 한 연령-지출 궤적은 세 시기의 조사자료 모두에 대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表 2〉와 〈附表 1〉 및 〈附表 2〉의 D행은 전체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의 연령별 변화를 보여준다. 모형 1과 모형 2로 표시된 처음의 두 추정치는 실제의 의류소비 지출액과 B행과 C행에 제시된 다른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한 지출액의 추정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으로 표시된 추정 값은 〈表 1〉의 첫번째 행에 제시된 바와 같은 총가계지출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얻은 것이다. 마지막 추정치가 다른 두 값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지만 세 가지 궤적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주로 모형 1에 기초한 연령-지출 궤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4. 家族扶養의 役割에 대한 評價

앞에서 살펴본 방법에 의해 추정된 연령과 소비지출의 관계에 따르면 자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은 중년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다. 1917-1919년의 경우 60-69세의 가구주 부부는 30대의 가구주 부부가 지출한 액수의 약 80%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表 2〉의 여섯 번째 열). 노년기의 소비지출 저하는 19세기 말과 대공황기에는 다소 덜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지출의 절정기에 비교한 60대의 소비지출은 1888-1890년의 경우 87-89%(〈附表 1〉의 (6)의 D), 1935-1936년의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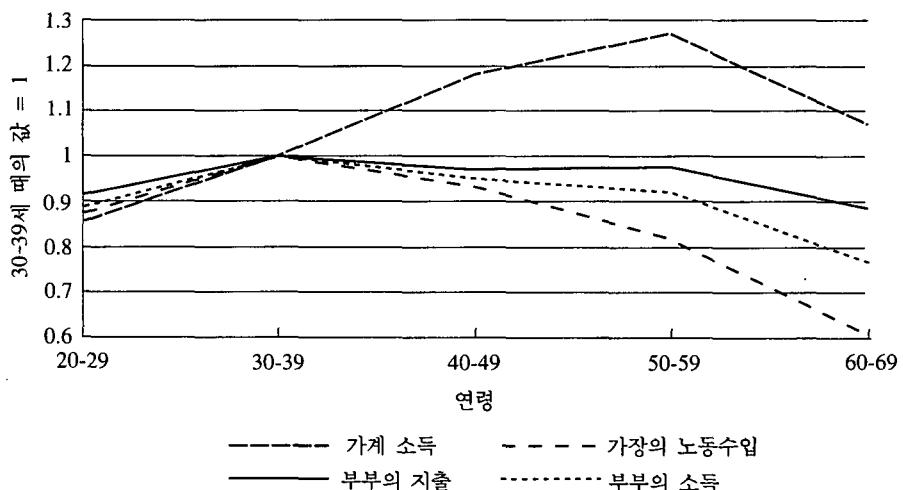
는 84-88%였다(〈附表 2〉의 (6)의 D).

중년 이후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 감소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⁷⁾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상이한 해석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이 현상은 중년 이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이미 대부분의 내구소비재를 보유하고 있는 노년부부는 젊은 부부에 비하여 이에 대한 지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의 감소가 특히 의류와 가구에서 두드러졌다라는 점과 잘 부합한다. 다른 가능한 설명은 중년 이후 소비지출의 감소가 가구내의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식품이나 의료비 지출의 감소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요인 모두가 작용하여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의 감소가 노년 가구주의 후생을 얼마나 감소시켰을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녀의 수입증가가 그 부모의 소비수준을 유지시켜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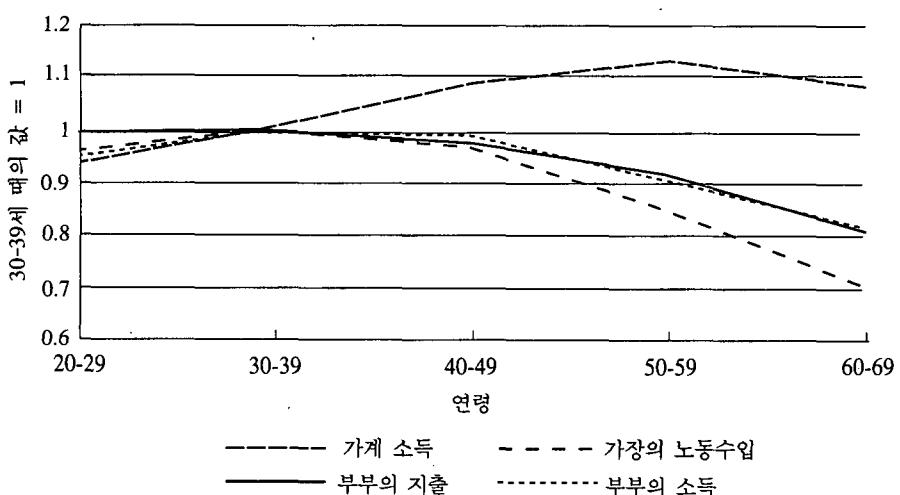
자녀의 부양이 노년기 부모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출과 소득의 움직임을 동시에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0대에서 60대 사이에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이 20% 감소했다고 하자.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연령에 따라 가구주 부부의 수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가구주 부부의 수입이 40% 감소했다면 소비지출 20% 감소는 자녀에 의한 노령기 부모의 부양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구주 부부의 수입도 20% 감소했다면 자녀의 부양은 부모의 소비지출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세 시기에 대해 연령에 따른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과 수입의 변화를 비교한다. 먼저 언급해야 할 점은 가구주 부부에게 귀속된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그다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집세나 이자수입 등 非勤勞所得과 家事勞動의 존재 때문이다. 예컨대 가구주 배우자의 노동수입 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가사를 도왔을 자녀의 수고를 반영

(7) 연령에 따른 소비의 감소에 대한 기존문헌의 설명은 고령화 자체보다 퇴직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퇴직자는 노동시장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열량의 크기가 연령과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Fogel(1993), pp. 7-13) 노령화에 따라 식료품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노년기의 낮은 소비지출은 소비의 한계효용이 노령화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다. 그리고 소비와 여가가 대체제이기 때문에 퇴직과 함께 소비가 감소한다는 지적도 있다(Deaton(1992),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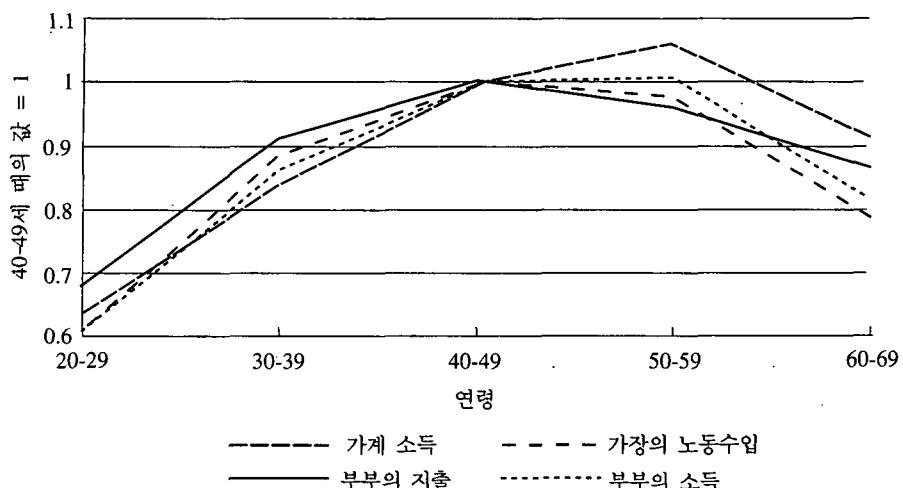


〈그림 1〉 年齡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化, 1888-1890



〈그림 2〉 年齡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化, 1917-1919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한 가구주 부부의 소득(부부의 소득)은 남편과 아내의 노동수입과 가구전체의 비노동소득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이유에 의해서夫婦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상한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주 부부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하한으로는 가구주 자신의 노동수입(家長의 노동수입)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목표가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이 자신들의 소득과 가구전체의 소득 가운데 무엇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인 만큼 가구의 총소득(가계소득)도 함께 비교하였다. 앞에서 지적했



〈그림 3〉 年齡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化, 1935-1936

듯이 이 연구를 통해 추정된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과 지출의 변화의 형태만을 고려하기 위해 노동수입이 절정에 달하는 연령(1888-1890년과 1917-1919년에는 30-39세, 1935-1936년에는 40-49세)에서의 소득 및 지출액을 1로 표준화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가구의 총소득보다는 부부 자신들의 소득의 변화를 더 가깝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령-소비지출 궤적과 연령-소득 궤적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함을 발견할 수 있다. 1888-1890년에는 자녀의 부양이 노령의 가구주의 생활수준 유지에 비교적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 30대와 비교하여 60대의 가구주 부부의 소득은 80%에 미치지 못한 반면 소비지출은 9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도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가구의 총소득보다는 자신들에게 귀속된 소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주 부부의 연령-소비 궤적은 가구의 총소득이 아닌 가구주 부부 소득의 변화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17-1919년에 와서는 가구주 부부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연령별 변화패턴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그림 2〉에서 보듯 가구주 부부의 연령-소비 궤적과 연령-소득 궤적은 30대 이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가구주 부부의 소득 대신 가구주의 노동수입이 고려되어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구주 부부의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간의 큰 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까지도 자녀의 수입은 노령의 가구주에게 상당히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그러나 이 때에 이르러서는 자녀의 수입증가가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19세기 말과 제1차 세계대전 사이 노동계급 가구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935-1936년에 이르러서는 가구의 총소득과 가구주 부부의 소득이 유사한 데서 알 수 있듯이(〈그림 3〉) 가계에 대한 자녀의 공헌도가 크게 감소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통해 진행된 출산율의 감소와 10대 자녀의 노동시장 참가율 감소를 반영한다.(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세기에 와서는 이미 자녀의 수입증가가 노령기 가구주의 소비수준을 유지해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었다. 사실 19세기 말에 있어서 조차 자녀의 부양이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은 매우 제약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의 액수로 볼 때 20세기 초 미국 고령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 자신들의 수입과 함께 저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지출의 변화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소위 '가족전략'과 관련된 심리적인 비용이다. 자녀에 의한 부모부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가 소비의 감소나 인적자본축적의 기회 박탈 등의 형태로 희생을 무릅썼음을 의미한다(Thernstrom(1964), Goldin(1981)). 노령의 부모와 장성한 자녀의 불편한 동거와 강요된 수입의 이전에서 비롯된 가정의 심각한 세대간 갈등은 이 시기에 관한 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Gratton(1993)). 자녀에 대해 이타적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부양으로부터 누린 물질적인 혜택은 '가족전략'에서 빚어진 심리적인 비용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전략'이 노년기의 후생에 공헌한 정도는 더욱 평가절하되어야 할 것이다.

5. 退職者들의 經濟的 地位

이 논문을 포함하여 1930년대까지의 가구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한 모든 연구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분석에서 배제한다는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가 다루는 시기에 있어서 퇴직자들이 현역노동자들과 유사한 경제적 지위를 누렸는지를

(8) 아동노동 감소의 원인으로는 제조업부문 고용에 있어서 최소연령제한을 설정한 주별 아동노동법(state child labor law)의 통과와 아동의 취학을 강제한 의무교육법의 시행 등이 꼽힌다. 아동노동법의 영향에 대해서 Moehling(1999), 의무교육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Margo and Finegan(1996)을 참고하라.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⁹⁾ 그러므로 현역노동자들의 표본에 기초한 결과를 토대로 노령자들의 경제적 상태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와 현역노동자의 소득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194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1940년 연방센서스는 전체 인구에 대해 노동소득의 크기를 조사한 최초의 자료이다. 그 후 1950년 연방센서스는 모든 종류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을 전체 인구에 대해 보고해준다. 그런데 퇴직자의 경우에는 비노동소득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1950년 센서스는 퇴직자와 현역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선행한 자료인 셈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년남성의 평균소득을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참가자와 퇴직자간에 비교하기로 한다.⁽¹⁰⁾

〈表 3〉은 60세 이상의 남성 가운데 현역노동자와 퇴직자의 個人所得(personal income) 및 家計所得(family income)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퇴직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노동시장 참가자에 비해 명백하게 낮았음을 드러낸다. 개인소득으로 볼 때 60세 이상 퇴

〈表 3〉勞動力 參加上의 地位에 따른 老年男性의 平均所得 및 平均 家族 數: 1950年

	60세 이상		60-69		70-79		80세 이상	
	현역 ^a (14494) ^b	퇴직자 (11414)	현역 (10993)	퇴직자 (3888)	현역 (2545)	퇴직자 (4716)	현역 (273)	퇴직자 (1879)
총 가족소득 ^c	3,033	1,261	3,228	1,484	2,400	1,226	1,999	933
개인소득 ^d	2,541	854	2,707	993	1,986	831	1,714	636
기타소득 ^e	493	407	521	791	414	395	285	297
평균 가족 수	2.75	2.72	2.79	2.74	2.63	2.68	2.81	2.78

註: a. 실업자를 포함. b. 팔호안은 관측인원. c. 센서스에 기록된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얻은 가족의 총 세전 소득(total pre-tax money income). d.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세전 개인소득.

e. 총 가족소득과 개인 소득의 차이.

資料: 190년 센서스의 IPUMS를 이용하여 계산.

(9) Gratton(1996)은 20세기 초의 노령인구가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동시대의 보고서들을 인용하며 퇴직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은 동시대의 노동자들의 저축규모가 매우 적었으며(James, Thomas, and Palumbo(1997)) 퇴직의 준비는 저축의 주요 동기가 아니었다[Alter, Goldin, and Rotella(1994)]는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건대 그 대표성이 의심된다. 더욱이 20세기 초의 도시 지역에서 자산은 상당부분이 주택의 형태로 보유되었는데 퇴직자금의 마련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므로 실제의 현금수입은 자산보유의 액수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10) 사용된 자료는 1950년 센서스의 Integrated Public Use Micro Samples(IPUMS)이다. 이 자료에 관해서는 Ruggles and Sobek(1997)을 보라.

직남성은 동일 연령의 노동시장 참가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약 삼분의 일을 얻었을 뿐이다. 앞에서 분석한 가구소비지출자료가 비농업부문의 肉體勞動者(blue-collar worker)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퇴직자와 현역노동자의 비교도 이 직업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센서스 자료의 특성상 특정 직업에 따른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던 퇴직자들이 농업자산에 기반하여 전직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렸던 점을 고려한다면 비농업부문의 육체노동자의 경우 퇴직자와 현역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여기에 제시된 전체인구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가족의 수입도 퇴직자들의 낮은 소득을 그다지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도 퇴직자들의 소득은 현역노동자들의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表 3>에 제시되어 있듯이 퇴직자와 현역노동자 가족의 크기는 거의 같았으므로 이상의 비교는 1인당 소득으로 보아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1949년 이전의 시기는 어떠했을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현역 노동자와 비교한 퇴직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위의 결과에 의해 제시되는 것보다 나빴을 것으로 판단된다. 1930년대와 1940년대를 통해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보조금 및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었다. 1935년에는 社會保障法(Social Security Act)의 통과와 함께 빈곤층, 특히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노령자들을 대상으로 老人補助金(Old Age Assistance)이 제공되었다. 1940년까지는 6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22%가 노인보조금의 수혜대상이었으며 평균적인 월수령액은 약 20달러였다. 1940년에는 의무적인 보험프로그램으로서 老齡年金(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49년에 이르러서는 퇴직자의 소득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퇴직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이 없었던 1930년대 이전의 시기에는 퇴직자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가 더 열악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은 가족에 의한 老齡者 扶養의 기능이 보다 강했던 20세기 초에는 퇴직자가 비슷한 연령의 현역 노동자에 비해 자녀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20세기 초 퇴직자들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은 그들의 상대소득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나았을 수도 있다. 현존하는 자료를 가지고는 이 시기에 있어서 퇴직한 부모가 자녀로부터 어느 정도의 부양을 받았는가를 직접 평가할 수 없다. 여기서는 가구의 주거형태를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퇴직이 자녀와 同居할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1900년과 1910년의 센서스 원사료(manuscript census)에 성공적으

로 연결되고 1900년까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었던 3,100명의 남북전쟁 北軍 참전병사의 표본을 이용하였다.⁽¹¹⁾ 여기서는 이 표본을 1900년에 50세 이상이었고 직업이 熟練工 (craftsmen)이나 組立工 (operatives) 혹은 單純 肉體勞動者 (manual laborers)였던 940명으로 제약하였다. 이는 이 논문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비농업부문의 육체노동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직업들을 분석에 포함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표본을 1900년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가를 기준으로 둘로 구분하였다. 즉 이 두 집단의 내에서는 1900년의 노동력 참가여부와 家族居住形態가 통제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는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의 노동력 참가상의 지위변화가 1910년의 가족거주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관찰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表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20세기 초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퇴직은 자녀와 떨어져 살게될 가능성을 높였음을 보여준다. 1900년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644명 가운데 1910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던 남성들은 70%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던 반면 퇴직자들은 61%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表 4>의 A항).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퇴직자와 현역노동자간의 자녀동거비율의 차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들(1910년에 60세에서 64세 사이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00년 현재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비교적 소수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노동력 참가상의 지위변화는 가족주거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表 4>의 B항). 동거를 가족간의 유대와 경제적 지원의 지표로 본다면 이상의 결과는 20세기 초에 퇴직자들이 현역노동자들에 비해 더 큰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¹²⁾

(11) 이 자료는 '노동력 참가, 질병, 사망에 관한 생애초기의 지표들(Early Indicators of Later Work Level, Disease, and Death)'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 연결되었다. 이는 남북전쟁 중 북군에 복무했던 35,747명의 백인남성이 群集標本抽出 (cluster sampling)의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이들을 군복무기록, 남북전쟁연금기록, 건강진단기록과 1850년, 1860년, 1900년, 1910년의 센서스 원사료에 연결하여 만들어졌다. 이 자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Fogel(1993)을 참조하라. 여기에 이용된 표본은 전체표본 가운데 센서스와의 연결작업이 완결된 28,526명(전체의 약 80%) 표본에 기초한 것이다. 이 가운데 1900년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 1900년 4월까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10,456명이었고 이 가운데 8,891명이 1900년 센서스 원사료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중 1900년 현재 50세 이상의 참전병사가 8,817명이었다. 이 8,817명 가운데 3,010명(34%)이 1910년까지 사망했고 1,180명(13%)은 1910년 센서스 원사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00년과 1910년의 센서스에 연결된 패널자료에 포함된 인원은 4,624명이며 이 가운데 3,100명이 1900년 현재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었다.

(12) 독립해서 살면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거가 부모부양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Gutmann(199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던 노령자들은 20세기 초까지 거주지역내에서 기혼자녀를 비롯한 친척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도 오늘날

〈表 4〉 1900-1910年 勞動力 參加上의 地位 變化와 子女와의 同居

A. 1900년에 자녀와 동거하고 있던 경우				
1910년의 연령	1910년 퇴직여부	관측인원	1910년의 동거비율	Chi-square(p-value)
60세 이상 전체	현역	422	69.9	5.423
	퇴직	222	60.8	(0.020)
60-64세	현역	129	74.4	4.619
	퇴직	31	54.8	(0.032)
65-69세	현역	196	66.8	0.288
	퇴직	85	63.5	(0.591)
70세 이상	현역	97	70.1	2.107
	퇴직	106	60.4	(0.147)
B. 1900년에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1910년의 연령	1910년 퇴직여부	관측인원	1910년 동거비율	Chi-square(p-value)
60세 이상 전체	현역	177	13.0	0.833
	퇴직	119	16.8	(0.361)
60-64세	현역	43	11.6	0.008
	퇴직	16	12.5	(0.927)
65-69세	현역	71	12.7	0.141
	퇴직	39	10.3	(0.707)
70세 이상	현역	63	14.3	1.233
	퇴직	64	21.9	(0.267)

資料: 남북전쟁 참전병사 표본.

이상에서 나타난 퇴직자와 현역노동자의 경제적 격차는 앞에서 제시된 현역노동자들의 연령-소득 및 연령-소비의 궤적이 전체 노령인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 현역노동자들만을 포함한 자료에 기초한 결과는 노령인구 전체의 생활수준을 얼마나 과대평가하는가를 살펴보자. 1910년 60세 이상 남성인구 가운데 30% 이상이 經濟活動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1949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60-69세의 퇴직자가 같은 나이의 현역노동자가 얻는 소득의 37%를 벌어들였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제시된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1910년대에는 가구 주 부부의 소비지출이 가구 전체의 소득이 아닌 부부 자신들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에 비해 교통 및 통신이 미비했으므로 동거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에 있어 매우 유리한 거주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퇴직자를 포함한 노령인구 전체의 연령-소비지출 궤적을 도출한 결과 60-69세인 가구주 부부의 소비지출은 30-39세 부부의 소비지출의 66%에 불과했다.⁽¹³⁾ 이는 현역노동자들만을 고려해서 계산한 결과인 81%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계산방법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적어도 현역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노령인구 전체의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퇴직자들을 배제한 분석의 결과는 시간에 따른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Gratton(1996)은 1949년의 노령 노동자들이 19세기 말의 동일 연령의 노동자들에 비해 세 배의 노동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보아도 35-39세 가구주의 수입에 대한 55-59세 가구주의 수입의 비율이 1890년의 81%에서 1935년까지 88%로 개선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 퇴직자들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60세 이상 남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1880년 85%에서 1950년 55%로 크게 감소하였다.⁽¹⁴⁾ 앞에서 설정했던 가정과 같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전 시기를 통해서 1949년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의 소득이 현역노동자의 소득의 34%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Gratton(1996)의 추정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노령노동자의 소득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세 배로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60세 이상 남성들의 소득은 1880년과 1950년 사이 약 두 배 정도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¹⁵⁾ 이 역시 조악한 계산이지만 퇴직자를 고려할 경우 노령인구의 소득은 기존의 결과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1917-1919년 사이 60-69세의 현역노동자가 가구주인 부부의 소비지출은 \$984였다. 위에서 도입된 가정에 따르면 동일한 연령의 퇴직자 부부의 소비지출은 이 액수의 37%인 \$364이다. 그러므로 퇴직자의 가중치를 30%로 하여 계산한 60-69세 부부 전체의 소비지출액은 \$798이며 이는 30-39세 현역노동자 부부의 평균소비지출액(\$1,213)의 66%이다.

(14) 1880년과 1950년 센서스의 IPUMS 자료에서 계산되었다. 1940년 이전의 노동력 참가의 정의와 장기적인 노동력 참가율의 추이를 들러싼 논의에 관해서는 Ransom and Sutch(1986, 1989), Moen(1987a, 1987b), Margo(1993), Carter and Sutch(1996b), Lee(1998) 등을 참조하라.

(15) 1880년의 60세 이상 남성 가운데 현역노동자의 소득을 y 라고 하자. 이 경우 60세 이상 남성 전체의 평균소득은 85%의 노동력 참가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85 \times y + 0.15 \times 0.34 \times y = 0.9y.$$

1950년의 60세 이상 남성 현역노동자의 소득은 $3y$ 이고 동 연령층의 노동력 참가율은 55%이다. 따라서 1950년의 60세 이상 남성인구의 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55 \times 3y + 0.45 \times 0.34 \times 3y = 2.1y.$$

6. 맷음말: 福祉國家 形成에 대한 含意

미국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Gratton(1996)의 연구를 비롯한 최근의 문헌들은 산업화시기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소위 '가족전략'이라고 하는 가족 내의 자원배분은 노령기의 산업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했으며 노년 노동자들의 수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사이 절대적으로나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동시대인들에 의해 제기된 산업화시기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의존의 문제는 다분히 새로운 복지제도들을 도입하려는 革新主義(progressivism) 시대와 뉴딜기의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에 제시된 결과들은 20세기 초 노령자들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동시대인들 우려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전의 산물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사회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의 수입증가에 불구하고 부모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노령화에 따라 감소했다는 점에서 '가족전략'은 노령기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다. 산업화 시기를 통한 빠른 경제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여 노령인구의 소득이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근래의 문헌들이 제시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노령인구 전체를 고려할 경우 노령인구의 소득은 미국 전체인구의 소득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 노년인구의 경제적 지위가 절대적으로는 다소 개선되었을지 모르나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서는 더욱 열악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 다룬 60년 동안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 노령인구의 생활수준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열악해 보인다. 1949년, 60세 이상 남성 가구의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의 삼분의 이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남성의 가정은 전체 가정의 12%를 차지한 반면 소득수준으로 볼 때 하위 오분의 일 가정의 27%를 점유하고 있었다. 반면 상위 5%의 부유층 가정 가운데 11%가 노령자 가정이었는데 이는 노령자들의 소득의 불평등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음을 의미한다(U.S. Bureau of the Census(1975), G154-156). 이처럼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낮고 그 분배상태는 불균등했으므로 빈곤이 노령인구에게 있어서 특히 심각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1949년 현

재 60세 이상 남성의 약 40%가 전체 가정의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낮은 가계소득을 얻고 있었다.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1960년 중반에 이르러서도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거의 삼분의 일인 공식적인 빈곤선을 밑도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빈곤율은 같은 시기 18-64세 인구의 빈곤율 10%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지제도의 대상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밑바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공적인 복지제도의 필요성은 앞에서 본 평균적인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했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특히 산업노동자 출신의 퇴직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었다. 그런데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퇴직자의 비율은 1880년 15%에서 1950년 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화 기간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인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Lee(2000)에 따르면 20세기 초 노동시장에서 노령에 따른 불리함이 특히 심했던 직업은 판매원, 숙련공, 조립공 등이었다. 그런데 50대의 남성노동력 가운데 이 직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1880년 25%에서 1940년 37%로 증가했다. 반면 노령자에 대해 비교적 나은 노동시장 여건을 제공해 주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자영농업, 관리직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56%에서 3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참가나 직업구조의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화 시기 노령인구가 경제적으로 유복했다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실증적으로 뒷받침했던 Gratton(1996, p. 57)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는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20세기 초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증거가 이 결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전통적인 비관론을 증명할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에 제기된 낙관론을 더 이상의 재고 없이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助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96

팩시: (02)886-4231

E-mail: clee@rome.snu.ac.kr

〈附表 1〉 1888-1890年 家口主 夫婦의 年齡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化(달러)

	가구주의 연령					(6) (5)/(2)
	(1) 20-29	(2) 30-39	(3) 40-49	(4) 50-59	(5) 60-69	
관측 인원	1,292	2326	1783	893	281	
A. 의류(실제치)	62	60	52	49	40	0.667
의류(추정치)	63	75	68	65	43	0.573
B. 모형 1(더미변수)						
식료품	182	199	204	217	209	1.050
주거	71	82	84	80	70	0.853
가구	30	23	19	16	11	0.478
연료	25	26	27	28	29	1.115
의료	16	18	17	15	15	0.833
기타	78	99	90	89	78	0.788
C. 모형 2(다항식)						
식료품	189	195	201	210	208	1.067
주거	77	80	80	77	71	0.888
가구	29	27	23	15	5	0.185
연료	25	26	27	28	30	1.154
의료	17	18	17	15	12	0.667
기타	87	93	93	84	67	0.720
D. 총지출						
모형 1	464	507	493	494	452	0.892
모형 2	486	499	493	478	433	0.868
모형 3(총계)	466	518	510	510	455	0.878
E. 가계 지출	519	592	687	717	614	1.037
F. 가계 수입	557	649	766	820	694	1.069
G. 가구주의 노동 수입	512	582	539	477	354	0.608

資料：1888-1890년 Cost of Living Survey.

〈附表 2〉 1935-1936年 家口主 夫婦의 年齡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化(달러)

	가구주의 연령					(6) (5)/(2)
	(1) 20-29	(2) 30-39	(3) 40-49	(4) 50-59	(5) 60-69	
관측 인원	309	826	680	382	167	
A. 의류(실제치)	120	147	149	143	110	0.748
의류(추정치)	142	198	209	191	137	0.692
B. 모형 1(더미변수)						
식료품	420	525	557	520	485	0.871
주거	160	234	269	270	267	0.993
가구	57	65	64	55	35	0.547
연료	272	369	406	377	334	0.823
의료	66	95	101	100	76	0.752
기타	176	277	334	352	330	0.988
C. 모형 2(다항식)						
식료품	431	520	555	536	465	0.838
주거	154	228	271	283	262	0.967
가구	61	66	63	54	37	0.587
연료	272	365	406	394	329	0.810
의료	64	93	105	101	81	0.771
기타	158	280	346	357	311	0.899
D. 총지출						
모형 1	1,271	1,712	1,880	1,817	1,637	0.871
모형 2	1,260	1,699	1,895	1,868	1,595	0.842
모형 3(총계)	1,153	1,566	1,733	1,677	1,527	0.881
E. 가계 지출	1,171	1,555	1,778	1,788	1,607	0.904
F. 가계 수입	1,559	2,073	2,471	2,626	2,271	0.919
G. 가구주의 노동 수입	1,256	1,842	2,086	2,035	1,655	0.793

資料：1935-1936년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參 考 文 獻

- 이철희(2000)：“미국의 산업화와 노년노동：1880-1940,”『경제사』, 28, 139-166.
- Alter, G., C. Goldin, and E. Rotella(1994): “The Savings of Ordinary Americans: The Philadelphia Savings Fund Societ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4, 735-767.
- Armstrong, B.(1932): *Insuring the Essentials: Minimum Wage Plus Social Insurance-A Living Wage Program*, New York, Macmillan.
- Becker, G.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gstrom, T.(1996): “A Survey of Theories of the Family,”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in M: Rosenzweig, and O. Stark(eds.) Amsterdam, North-Holland.
- Bodnar, J.(1985): *The Transplanted: A History of Immigrants in Urban Ame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arter, S.B., and R. Sutch(1996a): “Myth of the Industrial Scrap Heap: A Revisionist View of Turn-of-the-Century American Retire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 5-38.
- _____ (1996b): “Fixing the Facts,” *Historical Methods*, 29, 5-24.
- Chiappori, P.(1988): “Rational Household Labor Supply,” *Econometrica*, 56, 63-89.
- _____ (1992): “Collective Labor Supply and Welf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437-467.
- Chudacoff, H.P., and T.K. Hareven(1978): “Family Transition into Old Age,” in T.K. Hareven(ed.), *Transition: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s*, New York, Academic Press, 217-243.
- _____ (1979): “From Empty Nest to Family Dissolution: Life Course Transition into Old Age,” *Journal of Family History*, 4, 69-83.
- Cowgill, D.O.(1974): “The Aging of Population and Societ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1-18.
- Deaton, A.(1992): *Understanding Consump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aton, A., and C. Paxson(1999): “Growth and Saving among Individuals and Households,” Mimeo.
- Epstein, A.(1928): *The Challenge of the Aged*, New York, The Vanguard Press.

- _____ (1938): *Insecurity: A Challenge to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 Fischer, D.H.(1977): *Growing Old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ogel, R.W.(1993): "New Sources and New Techniques for the Study of Secular Trends in Nutritional Status, Health, Mortality, and the Process of Aging," *Historical Methods*, **26**, 5-44.
- Goldin, C.(1979): "Household and Market Production of Families in a Late-Nineteenth-Century American City,"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6**, 111-131.
- _____ (1981): "Family Strategies and the Family Econom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Role of Secondary Workers," in T. Hershberg(ed.), *Philadelphia: Work, Space, Family, and Group Exper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ssays Toward an Interdisciplinary History of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ebner, W.(1980): *A History of Retiremen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n American Instit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atton, B.(1986): *Urban Elder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Creation of Retirement: Families, Individuals and the Social Security Movement," in K.W. Schaie, and W.A. Achenbaum(eds.), *Societal Impact on Aging: Historical Perspectives*, New York, Springer.
- _____ (1996): "The Poverty of Impoverishment Theory: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1890-195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 39-61.
- Gratton, B., and F. Rotondo(1991): "Industrialization, the Family Economy, and the Economic Status of American Elderly," *Social Science History*, **15**, 337-362.
- Guttmann, M.P.(1995): "Older Lives on the Frontier: The Residential Pattern of the Older Population of Texas, 1850-1910," in D. Kertzer, and P. Laslett(eds.), *Ageing in the Past: Demography, Society, and Old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75-202.
- Haber, C.(1983): *Beyond Sixty-Five: The Dilemma of Old Age in America's Pa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ines, M.(1979): "Industrial Work and the Family Life Cycle, 1889-1890,"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4**, 289-356.
- _____ (1981): "Poverty, Economic Stress, and the Family in a Late-Nineteenth-Century American City: Whites in Philadelphia, 1880," in T. Hershberg(ed.), *Philadelphia: Work, Space, Family, and Group Exper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ssays Toward an*

- Interdisciplinary History of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even, T.K.(1982): *Family Time and Industrial Tim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eran, P.M.(1997): "Family Income and Child Labor in Carolina Cotton Mills," *Social Science History*, **21**, 297-320.
-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ost of Living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1888-1890*. ICPSR 7711,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 _____: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States, 1917-1919*. ICPSR 8299,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 _____: *Study of Consumer Purchases in the United States, 1935-1935*. ICPSR 8908,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 James, J., M. Thomas, and M. Palumbo(1997): "Have Working-Class Americans Always Been Low Savers?" Paper presented at the 1997 ASSA Meetings.
- Keyssar, A.(1986): *Out of 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ear, E.P., and R.T. Michael(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C.(1998): "Long-Term Unemployment and Retirement in Early-Twentieth-Century America,"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844-856.
- _____(1999): "Sectoral Shif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the United States, 1880-1940,"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25**,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2000): "Labor Market Status of Older Males in Early Twentieth Century America,"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27**, Seoul National University.
- Lubove, R.(1968): *The Struggle for Social Security: 1900-1935*,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Lundberg, S., and R. Pollak(1993): "Separate Spheres Bargaining and the Marriage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988-1010.
- _____(1994): "Noncooperative Bargaining Models of Marriag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4**, 132-137.
- Lundberg, S., R. Pollak, and T. Wales(1997): "Do Husbands and Wives Pool Their

- Resources? Evidence from the U.K. Child Benefit," *Journal of Human Resources*, **32**.
- Manser, M., and M. Brown(1980): "Marriage and Household Decision Making: A Bargaining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1**, 31-44.
- Margo, R., and T.A. Finegan(1996): "Compulsory Schooling Legislation and School Attendance in Turn of the Century America: A Natural Experiment Approach," *Economic Letters*, **53**, 103-110.
- Margo, R.A.(1993):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Americans in 1900: Further Result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0**, 409-423.
- McElroy, M., and M. Horney(1981): "Nash Bargained Household Decis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2**, 333-349.
- Moehling, C.M.(1996): "Work and Family: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American Families, 1880-1920,"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_____(1999): "State Child Labor Laws and the Decline of Child Labor,"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6**, 72-106.
- Moen, J.R.(1987a): "Essays on the Labor Forc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he United States From 1860 Through 1950,"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_____(1987b): "The Labor of Older Americans: Com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7**, 761-767.
- Neckerman, K.M.(1995): "Divided Households: Extended Kin in Working-Class Chicago, 1924," *Social Science History*, **19**, 371-398.
- Ransom, R.L., and R. Sutch(1986): "The Labor of Older Americans: Retirement of Men On and Off the Job, 1870-1937,"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 1-30.
- _____(1987): "Tontine Insurance and the Armstrong Commission: A Case of Stifled Innovation in the American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7**, 379-390.
- _____(1989): "The Trend in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en, 1870-1930: A Reply to Moe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9**, 170-183.
- Ransom, R.L., R. Sutch, and S. Williamson(1993): "Inventing Pensions: The Origins of the Company-Provided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1900-1940," in K.W. Schaie, and W.A. Achenbaum(eds.), *Societal Impact of Aging: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38.

- Rotellar, E., and G. Alter(1993): "Working-Class Debt in the Late-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History*, **18**, 111-134.
- Ruggles, S., and M. Sobek(1997): *Integrated Public Use Micro Data Series*(Computer Fil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Social History Research Lab.
- Smith, D.S.(1979): "Life Course, Norms, and the Family System of Older Americans in 1900," *Journal of Family History*, **4**, 285-298.
- Squier, L.W.(1912): *Old Age Dependen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 Thernstrom, S.(1964): *Poverty and Progres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Tilly, L.A., and J.W. Scott(1978):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Holt, Rinehard, and Winston.
- United States Bureau of the Census(1975):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S: Colonial Times to 1970*, **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eaver, C.L.(1983): "On the Lack of a Political Market for Compulsory Old-Age Insurance Prior to the Great Depress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0**, 294-328.
- Weiler, N.S.(1989): "Industrial Scrap Heap: Employment Patterns and Change for the Aged in the 1920s," *Social Science History*, **13**, 65-88.